


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신림~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(2공구)]

- 점검일시 : 2019.06.13 (목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박상종

<p>○ 건설기계 안전(토목부)</p> <p>- 신림 방향(시점) 주차되어 있는 굴삭기는 잠금장치가 열려 있고 시동키가 분리보관 되어있지 않아 관련 운전자 외 조작 우려가 있으니 운전자가 운전석 이탈시 또는 주차시에는 시동키를 분리하여 관련 운전자 외 근로자가 조작을 못 하도록 하고, 관련 근로자 재발방지 교육 바람.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32(굴삭기)</p>	
<p>○ 건설기계 안전(토목부)</p> <p>- 구로 방향 본선 터널 바닥정리 작업 중인 굴삭기는 후방 충돌 재해예방을 위하여 후방카메라 모니터를 켜고, 운전자는 작업중 후방카메라를 모니터링 하면서 작업하도록 관련 운전자 재발방지교육 바람.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29(건설기계)</p>	
<p>○ 터널 안전(토목부)</p> <p>- 대인갱 #2 통로상에 지하수가 채수 되어 있어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 및 장비의 원활한 이동과 지반의 연약화 방지를 위하여 채수된 물을 배수 관리 바람.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터널-005(배수작업)</p>	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구로방향(중점) 자재 적치장에는 목재 자재가 다량으로 적치되어 있으니 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화기를 적정 간격으로 비치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3조(소화설비)



○ 보건 관리(토목부)

- 신림 방향(시점) 집수터널 슛크리트 타설 작업 중인 근로자는 보호구(보안경)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고 있으니 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작업환경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재발 방지 교육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

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신림방향(시점) 막장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수발공은 수발공 설치상태가 미비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고 터널 천단에서 지하수가 떨어지고 있으니 보완 바람.

